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합니다.)은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아래 열거한 보장 특별약관(이하 '해당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이 부가된 유효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해당 특별약관〉	
구 분	특약명
음주·뺑소니 (피해자)교통상해 관련 특별약관	·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 음주·뺑소니(피해자)교통상해부상(1-10급)보장 특별약관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관련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사망(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II(운전자)보장 특별약관 ·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부상(1-14급)II(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2조 (피해자의 정의)

'해당 특별약관' 에서 정한 피해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합니다.

대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 적용 전	이 특별약관 적용 후
음주·뺑소니 (피해자)교통상해 관련 특별약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에 영기된 피해자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서 확인되는 피해자
중과실(피해자) 교통상해관련 특별약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공소장 또는 검찰 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가해자(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제3조 (중과실사고의 정의)

'중과실(피해자)교통상해관련 특별약관' 에서 정한 중과실사고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 적용 전	이 특별약관 적용 후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 수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이하 '기소' 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 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	(변경 전과 동일)
(신 설)	단, 아래 사고의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에는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실사 고' 로 봅니다.
1.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에 해당되는 사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에 해당되는 사고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에 해당되는 사고	(변경 전과 동일)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의 규정에 의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정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상기와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